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29 발의연월일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년·조인철·황정아

김영배 · 김준형 · 김태선

권칠승 · 김병기 · 한민수

송기헌 · 박홍배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,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,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,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 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후단, 제2항 및 9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에"를 "제6항에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·관리할 때에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

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• 관리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12조제1항 전단에"를 "제12조제1항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2조제1항 전단에도"를 "제12조제1항에도"로 한다.

제54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2항에"를 "제12조제3항에"로 한다.

제55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12조제3항을"을 "제12조제4항을"로 한다.

제56조제1항 중 "제12조제3항"을 "제12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57조제1호 중 "제12조제2항"을 "제12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제1호 중 "제12조제1항을"을 "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" 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

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(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)의 관계인은 제1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 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특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・관 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장애 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 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 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 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・관리 하여야 한다. <신 설>

개 정 안

제12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

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) ① --

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· 관리할 때에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(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·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·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 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차단 등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이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하여 폐쇄·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<u>등에 석합하게 설지·관리하여</u>
<u>야 한다.</u>
<u>③</u>
-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<u>4</u>
- <u>제1항 및 제2항에</u>
, -1) 4 <del>2</del> ]
<u>⑤</u> <u>제4항</u>
,

- ⑤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 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수집·분석할 수 있는 시 스템(이하 "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 영할 수 있다.
- ⑥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<u>제5항에</u> 따른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<u>⑦</u> (생 략)

<신 설>

제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저 례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 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

<u>제1항 및 제2항에</u> 
<u>⑦</u>
<u>제6항에</u>
<u>⑧</u> (현행 제7항과 같음)
<u>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</u>
항 후단에 따라 스프링클러설
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
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
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
<u>있다.</u> ¶13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
제12조제1항에
<u>4 12</u> 5:4 18 9
<del></del>

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 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 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 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~ 4. (생 략)
- ⑤ (생략)

제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 저

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 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 명령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관 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4
제12조제1항에
<u> 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(현행과 같음)
세54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
①

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-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
- 2. ~ 6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.

-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
- 2. <u>제12조제3항을</u> 위반하여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. (생 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56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3항</u> 본 : 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

1. <u>제12</u> 조제3항에
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5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
포상금의 지급) ①
<u>.</u>
1.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
1. <u>//11/11/11 6 11  //11/6 5  //</u>
0
2. <u>제12조제4항을</u>
o /처레쾨 가ዕ\
<ul>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<li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li></ul>
제56조(벌칙) ① <u>제12조제4항</u>

쇄 •	차단	등의	행.	위를	한	자는
5년	이하.	의 징	역	또는	5천	만원
이하	-의 벌	금에	처형	한다.		

### ② (생략)

- 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<u>제12조제2항</u>, 제15조제3항, 제16조제2항, 제20조제2항, 제23조제6항,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. ~ 9. (생략)
- 제6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<u>제12조제1항을</u> 위반하여 소 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 라 설치·관리하지 아니한 자
  - 2. ~ 15. (생략)
  - ② (생 략)

 1. <u>제12조제3항</u>
2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1조(과태료) ①
 1. <u>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</u> 
 2. ~ 1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